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17-10호

2017년 2월 27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4174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예 규

전라남도 예규 제1058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7. 2. 27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라남도 조례 제4174호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나주시의 44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군별	번호	명 칭	위 치
나주시	44	다아유치원	빛가람동 23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 2. 27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예규 제1058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제2호 중 “(행정자치부 예규 제41호)” 를 “(행정자치부 예규제78호)” 로 한다.

제1장 제3호 중 “(연구직·지도직 포함)” 을 “(연구직·지도직·임기제·시간선택제 포함)” 으로 한다.

제2장 제3호 다목에 다음 규정은 신설한다.

- 또한 소속 공무원 중 (중증)장애인공무원 등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토록 운영할 수 있으며, 인정시간은 사이버학습 교육시간 산정기준에 의함

제2장 제3호 다목 표〈기관 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기관 지정학습 대상 및 요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기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행정기관, 민간(교육/연구)기관, 교육담당부서 등 ■ 교육방법 : 교육훈련기관 교육, 이러닝, 블렌디드교육, 직장교육, 원격교육 등 ■ 대상 교육훈련(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직장훈련 -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 직무와의 관련성,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판단 ■ 대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 주요 국정과제(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국정철학 및 국정기조, 주요 국정과제 및 추진전략, 시책교육, 공직자의 의무, 복무 등) - 직무역량(① 리더십, 의사소통, 갈등관리 등 리더십역량 ② 인사, 조직, 예산, 법제, 통계, 계약, 홍보 등 공통 직무역량) - 특수직무역량(기관별, 담당업무별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 |
|--|

※ 직급별·직렬별·담당업무별(지원/정책부서)로 달리 설정가능하며, 교육주체(내용), 특정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기관 지정 학습(기관별 직장교육 및 워크숍, 기획학습 등 포함 가능)

■ 학사관리 요건

- 평가 및 수료기준,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관리 기준 마련

* 출석·과제물·필기시험·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

■ 장기교육 등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제한

- 대상 : 기본교육, 국외훈련, 국내 학위과정 등

- 제한 : 이수 연도 기관별 기관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시간 이내로 제한

(총 교육훈련시간에는 모두 포함)

* 교육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년 이상인 경우에는 3배까지 인정 가능

제2장 제3호 마목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교육이수실적(수료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자료 제출 시 부서장은 인사(교육)부서와 협의 후 소급 입력 가능(교육실적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교육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장 제4호 다목 중 다음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 다만, 기관별·직급별 필수교육, 법령의 개폐 등으로 재교육이 불가피한 사항과 연구사·지도사 및 일반직의 경우 해당 직급재직기간 등을 감안하여 교육이수 3년이 경과한 경우 동일 교육과정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교육실적 인정 가능(동일 연도내 동일과정은 불인정) ‘으로 한다.

제2장 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 연간 이수해야 할 교육훈련시간 기준시간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text{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 \frac{\text{전일제공무원}}{\text{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주당 20시간 근무자 기준 상시학습시간 예시」

적용 대상	교육훈련(상시학습) 기준시간	
	전일제	시간선택제
일반직 5급 이하 (직종개편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신설직렬 제외)	80시간	40시간

- 직장교육,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등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실시
- 시간선택제 채용자 교육기간 3주 이상
 - 근무시간과 동일한 교육시간 만큼의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제3장 제2호 다목 중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제3장 제3호 중 ‘※ 교육생 선발 권고인원 : 70명(만 54세 이하)’를 ‘※ 교육생 선발 권고인원 : 74명(만 54세 이하)’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V. 기타 대학(대학원) 등 국내위탁교육훈련 운영

1. 목 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법 제13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6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이하 ‘국내훈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

2.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가. 기본원칙 및 구성

- 도지사, 시장·군수는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함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국장(과장)급 이상 공무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하며,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함
 - 다만, 6급 이하 훈련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위원을 팀장급,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나. 운영

- 교육훈련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함
-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6월 미만의 단기훈련 협의, 경미한 훈련계획변경, 훈련기관·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심의사항

- 연도별 국내훈련계획
- 국내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훈련기관 및 훈련기간 포함) 지정
-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 기타 국내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가. 선발방법

- 훈련대상자는 선발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기관별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국내대학 학사과정 위탁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발함

나. 훈련기관 선정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당해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음

다.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은 2년 6개월 이하, 국장·과장급 교육훈련은 1년 이하를 원칙으로 함

라. 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해야하며, 소속 훈련공무원이 국내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당해 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출한 훈련분야와 훈련과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여하는 훈련과제와 별도로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세부연구계획서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함
- 훈련주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마. 훈련계획의 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기간, 훈련방법 등)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갖추어 훈련계획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해야 함
 - 훈련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
 - 훈련기관의 장 또는 책임있는 관계관의 추천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계획의 변경이 부득이하거나 훈련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승인할 수 있음

- 국내대학(원) 학위과정의 훈련공무원이 훈련기간 중 훈련기관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동기간을 훈련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유학 휴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동기간의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함

바. 훈련결과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보고서가 정책 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 훈련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복무관리를 적극 지원함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
 -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법령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 등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해야 함
- 훈련공무원은 훈련주관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등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국내훈련대상자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음

5.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가. 복무의무

- 복무의무 중에 있는 자가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함.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함
- 복무의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 공무원이 타 부처로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봄

나. 복무의무 확보를 위한 조치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라 함은 훈련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함
-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각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부처 간 전보 기타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함
-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국내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기간 종료 전에 휴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훈련공무원의 훈련비 정산관계, 각종 보고사항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의무복무 확보대책 등에 대해서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다. 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 훈련예정 공무원의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에 관한 협의 시 훈련이수 후의 예정보직을 명시한 훈련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예정보직은 훈련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이어야 함
-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복직 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통합 및 조정된 때
 -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 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교육훈련비 지급기관과 면직결정기관이 서로 달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교육훈련비 지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 완료시까지 면직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6. 선발요건 및 선발방법이 다른 훈련

- 국내 사이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지방공무원으로 각 사이버대학교의 신·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지방공무원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신·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 야간대학교
 - 학사학위 미취득 지방공무원으로 선발 전년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연령 이하인 자이고, 해당 대학(교)에 신·편입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훈련 이수 후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내대학 위탁교육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함

7.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매년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선발계획 및 대상자 명단 제출(2월말)

제6장 제4호 다목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이수관리

가) 사이버교육과정

○ 상시학습 인정시간

-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시간은 및 학습 인정시간은 교육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한다.

제7장 제4호 나목에 다음 사항을 신설한다.

- ※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교육훈련의 경우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비 중 공무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비용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분기별, 반기별 등)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III. 기타 교육훈련 운영

1. 목 적

글로벌 다양화시대에 교육훈련기관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공직의 전문성 향상도모 등을 위한 교육훈련 역량강화 필요

2. 세부운영

가. 공로연수 대상자 합동연수 과정 운영

- 근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 VIII. 공로연수
- 합동연수 운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등 퇴직준비를 위해 실시하는 공로연수운영과 관련 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연수과정을 운영하되 지방공무원인사통합지침(공로연수)에 따라 60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운영
 - ※ 연수는 퇴직 후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강의와 세미나형식으로 운영하되, 재취업·노후생활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함

나. 재해재난 및 안전예방 등 직장교육 강화

- 근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20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방향 (매년) 중 국정과제 등 시책교육 지속 추진(예: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심폐소생술 등)
- 도 공무원교육원장은 재해재난 및 안전예방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재난관련 전문교육과정이 반영되어야 함
- 기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장교육 등을 통해 재해재난 및 안전 예방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재난관리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자연재해(지진, 태풍 등)대처법, 각종 안전사고와 비상사태 대처법,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및 감염병 대처법 등

3. 기타 행정사항

- 도지사(도 공무원교육원장)는 매년 교육훈련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2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

- 사이버교육은 교육 차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수별 이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정하여 인정시간을 부여할 수 있음
 - 예) 10차수인 사이버교육과정이 차수별 시간이 25분으로 구성된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인정시간 : 10차수*25분=250분(4시간10분 인정)
-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에도 연간 160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습 유형별 한도를 초과
(단,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은 제외)할 수 있음
-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
- 헌혈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시 상시학습(4시간) 인정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훈련부서 주관 (의무교육)	교육기관교육 (행정연수원, 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직장교육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기관주관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 등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	참가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인정)	30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 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직무관련 개인학습	시설학원등 교육 *사이버교육 포함	직무전산 어학 등	교육시간	60	수강증 등
	대학·대학원(자비) *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 포함	비학위과정	학기당 30시간	60	수료증,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학사과정	1학점당 3시간	100	
		석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박사과정	1학점당 5시간	100	
	자격증취득	기술사	30	30	자격증 (1년에 취득한 자격증 중 최상위 1개만 인정)
		기능장	25	25	
		기사	20	20	
		산업기사	15	15	
		기타	15	15	
	연구모임,세미나, 학술대회 등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기관 확 인
		토론단순참가	토론 및 참가시간	10	
	독서	독서	권당 3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직무관련 노하우 등 보고서	직무관련 보고서	편당 5시간	20	KMS 등록 또는 부서장 확인 등
	저술	개인	50	50	증빙자료제출
		공동	25	50	
	논문게재	논문	25	50	논문

< 유의사항 >

가. 1년 이상 국내외 위탁교육 : 총 교육기간을 1년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0. 4.1~2012. 3.31까지 2년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교육시간 부여방법

☞ 총 교육기간 2년이므로 160시간×2년 총 320시간을 인정

- 2010.4.1~2012.5.31까지 14개월간 국외훈련 실시자의 경우

☞ 최초 1년은 160시간 인정, 나머지 2개월은 100시간 인정 총 260시간을 인정

나. 개인학습의 대학·대학원(자비, 야간 등)의 경우 학기 단위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부여

- 2012년도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6학점), 2학기(3학점) 이수한 경우

☞ 총 45시간(9학점×5시간=45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

다. 교육훈련부서 교육명령(협의)이 없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개인학습으로만 인정

라. 재난재해 대응의 경우 주관부서의 사전 추진계획 및 사후 확인(근무일지 등)후 인정